

참고 2

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

| 항목 | 구 분 | | 공제금액·한도 | 공 제 요 건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구분 | 소득요건* | 나이요건** |
| 인적공제 | 기본공제 | | 1명당 150만원 | 본인 | × | × |
| | | | | 배우자 | ○ | × |
| | | | | 직계존속 | ○ | 만 60세이상 |
| | | | | 형제자매 | ○ |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|
| | | | | 직계비속 (입양자 포함) | ○ | 만 20세이하 |
| | | | | 위탁아동 | ○ | 만 18세 미만 |
| | | | | 수급자 등 | ○ | × |
| | | | | | | |
| | 추가공제 | | 경로우대 | 1명당 100만원 |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| |
| | | | 장애인 | 1명당 200만원 |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| |
| 부녀자 | | | 50만원 |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·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·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| | |
| 한부모 | | | 100만원 |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 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(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) | | |
| 연금보험료 공제 | | | 전액 |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·공무원연금법 등 (공적연금관련법)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· 기여금 | | |
| 특별 소득공제 | 보 험 료 | 건강보험료 | 전액 |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·장기요양보험료 (본인부담분) | | |
| | | 고용보험료 | 전액 |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(본인부담분) | | |

| 항목 | 구 분 | | 공제금액·한도 | 공 제 요 건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특별 소득공제 | 주 택 자 금 |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| 원리금 상환액의 40% (연 300만원 한도) | <p>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)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</p> <hr/> <p>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)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,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</p> <p>- 연 500만원 한도 : ① + 주택마련저축공제</p> |
| | |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| 이자상환액 (500만원, 1,500만원 한도) | <p>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) 주택* (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)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</p> <p>* '14년 이후 차입금부터 '국민주택규모 기준' 삭제</p> <p><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-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-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|
| | | 공제 한도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2.1.1.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(비거치식, 고정금리 : 1,500만원) : <① + ② +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> - '11.12.31 이전 차입분 연 1,000만원(상환기간 30년 이상 : 1,500만원) - '03.12.31 이전 차입분(상환기간 10년 이상) 연 600만원(상환기간 15년 이상 : 1,000만원, 상환기간 30년 이상 : 1,500만원) | |
| | | | | |

| 항목 | 구분 | 공제금액·한도 | 공제요건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그 밖의 소득공제 |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| 연 72만원 한도 |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% 공제 ※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| | | | | | |
| |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| 연 300만원 한도 | 소기업·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 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| | | | | | |
| | 주택마련저축공제 | 연 300만원 한도 | 주택마련저축* 납입액의 40% 공제 -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-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)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(2009.12.31. 이전 가입자만 해당) * 주택마련저축 ·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(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) · 주택청약종합저축(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) · 근로자주택마련저축(월 납입액 15만원 이하) | | | | | | |
| |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|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% [20%(2012년), 30%(2013년), 50%·30%(2014년) : 벤처조합·벤처기업 출자] |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※ 공제한도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공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'13년 이전 투자</td> <td>소득금액의 40%</td> </tr> <tr> <td>'14년 이후 투자</td> <td>소득금액의 5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공제한도 | '13년 이전 투자 | 소득금액의 40% | '14년 이후 투자 | 소득금액의 50% |
| | 구분 | 공제한도 | | | | | | | |
| | '13년 이전 투자 | 소득금액의 40% | | | | | | | |
| | '14년 이후 투자 | 소득금액의 50% | | | | | | | |
| |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|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- 총급여액 25%) × 15%(30%, 40%) | - 15% 공제대상 : 신용카드 사용액 - 30% 공제대상 ·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(체크카드),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· 전통시장 사용분(카드, 현금영수증) · 대중교통 이용분(카드, 현금영수증) - 40% 공제대상 : '14년 하반기, '15년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·대중교통이용분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'13년 사용분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 ('13년 대비 '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) - 본인,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(소득 제한, 나이제한 없음)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- 300만원과 총급여 20%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,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(최대 500만원) | | | | | | |
| |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| 연 400만원 한도 |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| | | | | | |
| |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| 근로소득금액 30% |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| | | | | | |
|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| 임금삭감액의 50% (공제한도 : 1천만원) |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(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-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) × 50% | | | | | | | |
|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| 이자상환액의 40% (연 300만원 한도) |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%를 임대인이 공제 | | | | | | | |
|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| 저축납입액의 40% (연 240만원 한도) |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(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)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| | | | | | | |

| 항목 | 구분 | 공제금액·한도 | 공제요건 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소득공제 종합한도 | 연 2,500만원 | <p>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용대상 : 주택자금공제, 주택마련저축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, 투자조합출자 등 (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)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, 우리사주조합 출자금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| | | | | | |
| 세액감면·세액공제 |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|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%(100%) | <p>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 (병역근무기간 제외 : 한도 6년)인 사람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'12.1.1. (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'14.1.1. ~ '15.12.31.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%(100%)*세액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50%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4.1.1. 이후 중소기업에 (재)취업한 29세 이하 청년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* 100%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3.12.31. 이전 중소기업에 (재)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| | | | | | |
| | 근로소득세액공제 | 50만원(63만원, 66만원) 한도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산출세액</th> <th>공제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만원 이하</td> <td>55%</td> </tr> <tr> <td>50만원 초과</td> <td>27만5천원 + 50만원 초과금액의 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공제한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: 66만원 •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: 66만원 - [(총급여액 - 5천5백만원)×1/2] →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•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: 63만원 - [(총급여액 - 7천만원)×1/2] →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| 산출세액 | 공제금액 | 50만원 이하 | 55% | 50만원 초과 | 27만5천원 + 50만원 초과금액의 30% |
| | 산출세액 | 공제금액 | | | | | | | |
| | 50만원 이하 | 55% | | | | | | | |
| 50만원 초과 | 27만5천원 + 50만원 초과금액의 30% | | | | | | | | |
| 자녀세액공제 | 1명당 세액공제액 2명 이하 15만원 3명 이상 20만원 | <p>기본공제대상 자녀(입양자, 위탁아동 포함)가 있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명 : 연 15만원 • 2명 : 연 30만원 • 3명 이상 : 연 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| | | | | | | |
| 연금계좌 |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| 연금계좌 납입액 (연 400만원 한도) × 12% | <p>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·개인형퇴직연금(IRP) 근로자 납입액</p> <p>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</p> | | | | | | |

| 항목 | 구 분 | 공제금액·한도 | 공 제 요 건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|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세액 감면 · 세액 공제 | 특별 세액 공제 | 보장성보험료 |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| | | | | | | |
| | |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|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 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| | | | | | | |
| | 의 료 비 | ㉠ 본인 | 의료비 공제대상금액* × 15% *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·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: 한도 없음 · 그 외 부양가족 : 연 700만원 | 총급여 3%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- 공제 가능 의료비 ·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(미용·성형수술비용 제외) ·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(한약 포함) 구입비 용(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) · 장애인보장구 구입·임차비용 · 시력교정용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용 (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) · 보청기 구입비용 ·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| | | | | | |
| | | ㉡ 65세 이상 | | -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| | | | | | |
| | | ㉢ 장애인 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의료비 공제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㉠ < 총급여액 3%</td> <td>(㉠+㉡+㉢) - (총급여액 3% - ㉠)</td> </tr> <tr> <td>㉠ >= 총급여액 3%</td> <td>(㉠+㉡+㉢) + 적은금액(㉠-총급 여액 3%), 7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 분 | 의료비 공제금액 | ㉠ < 총급여액 3% | (㉠+㉡+㉢) - (총급여액 3% - ㉠) | ㉠ >= 총급여액 3% | (㉠+㉡+㉢) + 적은금액(㉠-총급 여액 3%), 700만원 |
| | | 구 분 | | 의료비 공제금액 | | | | | | |
| | ㉠ < 총급여액 3% | (㉠+㉡+㉢) - (총급여액 3% - ㉠) | | | | | | | | |
| | ㉠ >= 총급여액 3% | (㉠+㉡+㉢) + 적은금액(㉠-총급 여액 3%), 700만원 | | | | | | | | |
| | ㉣ 그 외 부양가족 | ※ ㉡, ㉢, ㉣ : 나이·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| | | | | | | | |
| | 교 육 비 | 취학전 아동 | 교육비 공제대상금액* × 15% *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 · 취학전 아동, 초·중·고생 : 1명당 300만원 한도 · 대학생 : 1명당 900만원 한도 · 본인, 장애인 : 한도 없음 | 보육료, 학원비·체육시설 수강료, 유치원비, 방과후수업료 (특별활동비·도서구입비 포함, 재료비 제외), 급식비 | | | | | | |
| 초등학생 중·고등학생 | |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(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) | | | | | | | | |
| 대학생 | | 교육비, 학교급식비, 교과서대, 방과후학교 수강료(도서구입비 포함, 재료비 제외), 국외교육비 (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), 교복구입비(중·고생 50만원 이내) | | | | | | | | |
| 근로자 본인 | | 교육기관 교육비, 대학·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,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| | | | | | | | |
| 장애인 특수교육비 | |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*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*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,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| | | | | | | | |

| 항목 | 구 분 | | 공제금액·한도 | 공 제 요 건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세액 감면 · 세액 공제 | 특별 세액 공제 | 정치자금 기부금 | 10만원 이하 | 기부금의 100/110 | 정당, 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-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|
| | | | 10만원 초과 | ·3천만원 이하 : 기부금의 15% ·3천만원 초과 : 기부금의 25% * 공제한도 : 소득금액의 100% | |
| | | 기부금 | 법정기부금 | ·3천만원 이하 : 기부금의 15% |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|
| | | | 지정기부금 (종교단체 제외) | ·3천만원 초과 : 기부금의 25% * 공제한도 | 사회복지·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|
| | | 지정기부금 (종교단체) | ·법정기부금 : 근로소득금액의 100% ·지정(종교단체 외) : 근로소득금액의 30% ·지정(종교단체) : 근로소득금액의 10% | 종교의 보급,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(그 소속 단체를 포함)에 기부한 기부금 | |
| | | 표준세액공제 | 연 12만원 |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를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| |
| | | 납세조합 세액공제 |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% |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% 세액공제 | |
| | |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| 이자상환액의 30% | '95.11.1~'97.12.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'95.11.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| |
| | | 외국납부 세액공제 | 외국납부 세액 |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 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※ 세액공제한도 $\text{근로소득 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국외근로소득금액}}{\text{근로소득금액}}$ ·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| |
| | | 월세액 세액공제 | 월세액(750만원 한도)의 10% |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)로서 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(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월세액 *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* 2014년부터 '확정일자' 받을 요건 삭제 | |